



문화·축제
행사관계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전화상담 1800-5455

저작권 법률 및 제도, 저작권 계약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방문상담 www.copyright.or.kr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담관이 직접 대면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온라인상담 www.copyright.or.kr

전화·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률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장상담

기관·단체 등에서 대규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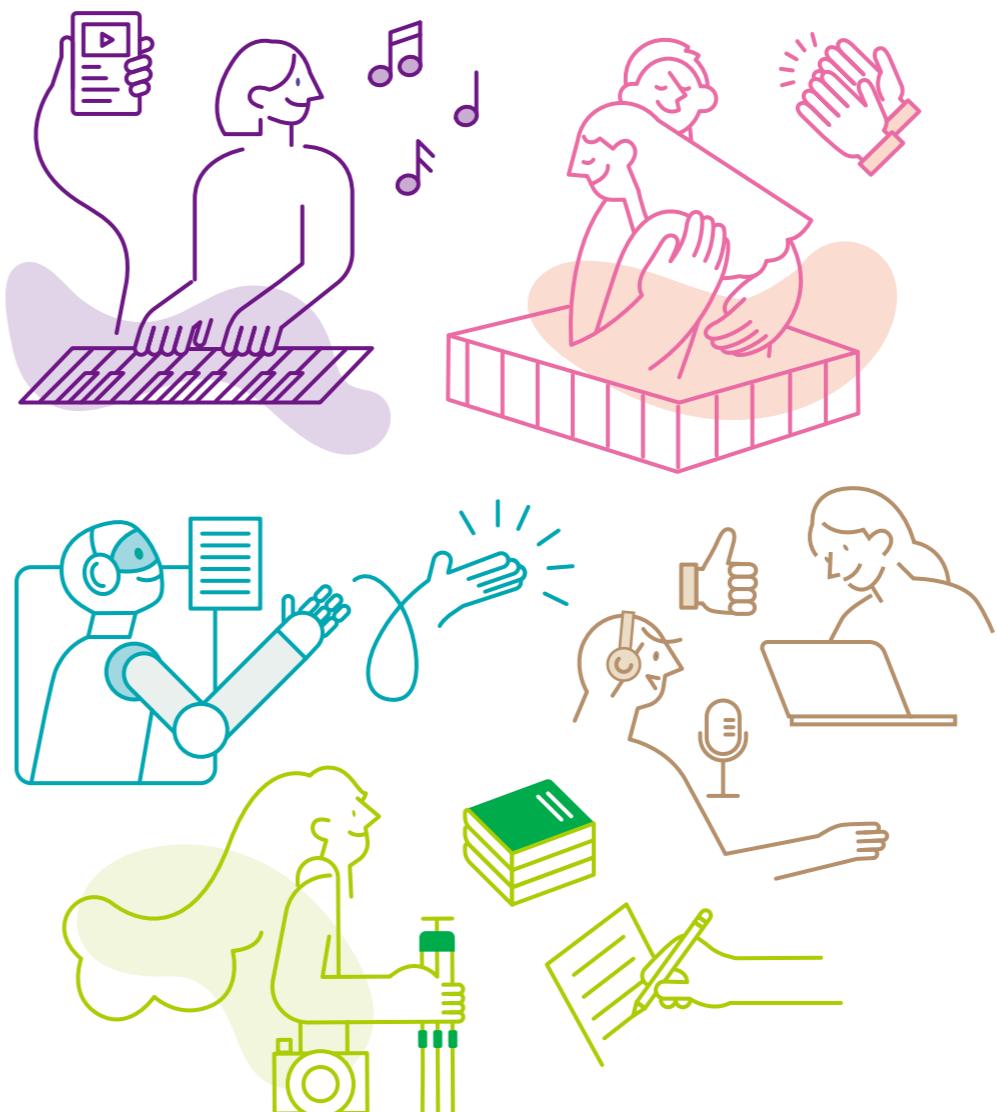


저작권관계자료 2025-10

문화·축제 행사관계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저작권관계자료 2025-10

문화·축제 행사관계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문화·축제
행사관계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 출처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문화·축제
행사관계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들어가며

이 책은 축제 및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분들께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의 구성은 독자의 이해와 활용 편의를 고려하여 가독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의 간략한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더 상세한 상담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는 챗봇, 유형별 상담, 법률문의 게시판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였으며 저작권상담센터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해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저작권 환경에서의 법률적 판단 기준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작권, 창작과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저작권상담센터는 상담을 통해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저작권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저작권상담센터에서는

저작권에 관해 궁금증이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저작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외 다른 법률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분쟁 조정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채널별 상담신청 및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800-5455**



1번 | 법률



2번 | 등록



3번 | 계약

상담가능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법정공휴일 제외)

위원회 누리집

위원회 누리집(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작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상담 |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챗봇상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무중단!
대화형 저작권 상담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상담정보

자주묻는 저작권 질의(FAQ)
다양한 저작권 사례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화상담 | 대화로 즉시 빠르고 원활히 소통하며 상담 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화상상담이 필요한 경우
하루전날까지 미리 예약해 주세요.



내방상담

경남 진주(본사) 또는 서울에서
사전예약 후 내방상담이 가능합니다.

게시판상담 | 글로 문의하면 뒤에 정리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문의
게시판

저작권 질의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관이 7일이내 답변해 드립니다.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문화예술 단체 및 중소기업 분야 등 저작권 산업 현장으로
전문 상담관이 찾아갑니다.

신청방법

전화 1800-5455으로 문의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며

3

저작권, 깊고가는 작은 정보 큰도움이 됩니다

4

Section. 1 개요

저작권(법)의 필요성	11
저작물이란?	12
저작권 효력 발생과 등록	14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15
저작권 보호기간	16
저작재산권의 제한	18



문화·축제 행사관계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Section.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안내	22
관련 법규	23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정리	26
비영리 공연·방송 운영 방법 체크리스트	28
상업용 음반에 대한 설명	30

Section. 3 저작물별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안내

어문저작물	33
1. 유명 작가의 시·글귀 등을 인용하고 싶어요.	33
2. 행사장에서 시·동화책 등을 구연하고 싶어요.	36
3. 인터넷에서 찾은 연극 대본을 비영리 행사에 이용하고 싶어요.	37
음악저작물	38
1.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서 대중가요를 틀고 싶어요	38
2. 버스킹이나 장기자랑에서 대중가요를 이용하고 싶어요.	41
3. 상금이 있는 노래자랑에서 대중가요 MR을 이용하고 싶어요.	43
4. 홍보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어요.	44

연극저작물	4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77
1. 연극 공연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싶어요.	45	1. '무료폰트'를 이용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싶어요.	77
2. 우리 단체에서 직접 창작한 무대를 유튜브에 올려 홍보하고 싶어요.	46	2.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싶어요.	78
3. K-POP 공연을 하고 싶어요.	48		
미술저작물	50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출물	80
1. 구매하여 소장 중인 미술품을 홍보 등에 이용하고 싶어요.	50	1.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싶어요.	80
2. 공모전 수상작을 홍보 용도 등으로 이용하고 싶어요.	52		
3. SNS에 떠도는 이미지를 홍보 용도 등으로 이용하고 싶어요.	54		
사진저작물	55		
1.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의 사진을 이용하고 싶어요.	55		
2. 지자체나 공공기관 누리집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고 싶어요.	57		
3. 행사 단체 사진을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싶어요(초상권)	60		
영상저작물	62	정보 제공 누리집	82
1. DVD, OTT 등을 이용하여 무료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싶어요.	62		
2.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이용(편집)하고 싶어요.	66		
3. 우리 기관에서 개최한 행사 장면이 송출된 방송물을 이용하고 싶어요.	70		
건축저작물	72		
1. 건축물을 본떠 전시 조형물을 제작하고 싶어요.	72		
2. 건물 앞 조형물을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요.	75		

저작권(법)의 필요성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이나 이에 인접한 권리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익을 얻음으로써,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저작물이 변형되고 왜곡되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창작 의욕이 꺼여 이들의 창작 활동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이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과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을 보호하고 정당한 이익을 분배하여 창작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필요합니다. 다만, 권리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후행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이 위축되고 저작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나 공공의 이익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제23조 내지 제38조 등)를 두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이익과 그 창작물의 이용자인 공중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창작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Section.1 — 개요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2)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외부에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아이디어를 표현한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지, 그 안에 내재된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저작물에 내재된 사상, 관념은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인의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하면 다양한 창작물의 생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인 '학문, 문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준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한편, 저작권법 제4조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저작물의 9가지 종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거가 아닌 예시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창작물도 얼마든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효력 발생과 등록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의 절차나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표적인 효과는 일정한 등록사항에 대하여 추정력·대항력 등 법적 효력의 발생입니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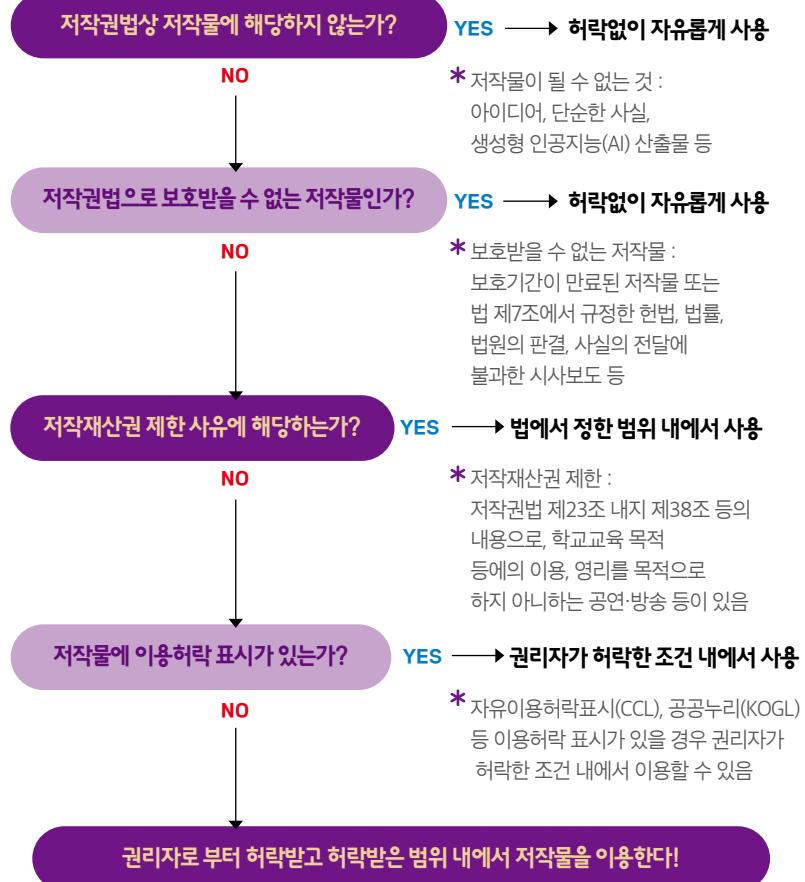
예시로 저작권법에 따라 성명과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 분쟁 발생 시 성명이 등록된 자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고, 등록된 연월일에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받음으로써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권리변동(양도, 질권설정 등)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저작권법 제54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호기간 연장,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등록 누리집 '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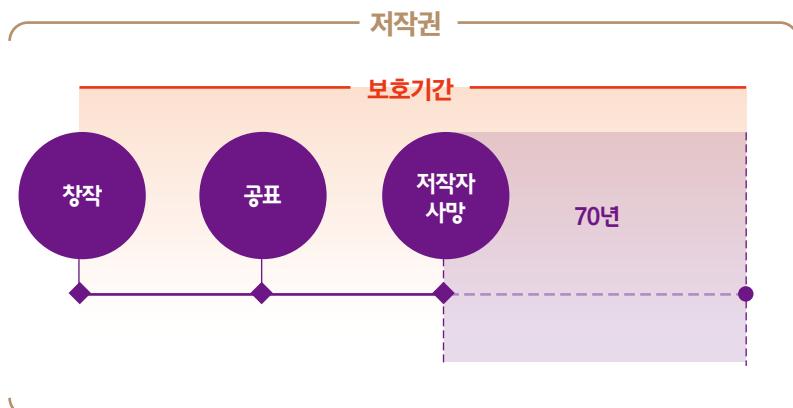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그림 1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저작권 보호기간

그림 2 저작권 보호기간



구분	보호기간	관련 규정
단독저작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생존 동안과 사후 70년	저작권법 제39조
공동저작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	
업무상저작물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저작권법 제41조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제42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그리고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또는 44조).

가령 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2023년 2월 25일 사망하였다면, 그 소설가가 쓴 소설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그 소설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그 보호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9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이 중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 또한 가능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설명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은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8조 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재판 등에서의 복제(제23조)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및 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출처의 명시(제37조)
- 저작인접권의 제한(제87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제94조)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제101조의3)
-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101조의4)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조의5)

* 제37조(출처의 명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지만, 단순히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출처 명시는 '허락 없는 이용'이 가능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는 보충적 요건일 뿐, 출처 기재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Section.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안내

우리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제2조 제3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은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제17조).

축제나 지역행사에서는 음악, 영상, 사진, 문학작품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원칙적으로는 ①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8조 등)에 해당하거나 ②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공공 영역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저작권 제한사유 중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규정은 축제나 공공행사 담당자들이 빈번하게 문의하는 조항입니다. 축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나 방송은 대부분 “공공 목적”이나 “문화 향유”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비영리와 영리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집니다.

이에 따라 본 안내서에서는 행사 운영자가 혼동하기 쉬운 ‘비영리 공연·방송의 적용 여부’를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이 규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주요 사례와 적용 판단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사 주최자와 실무 담당자가 축제나 공공행사에서 저작물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 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 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 육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정리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정리

구분	제1항 비영리 공연·방송	제2항 상업용 음반 · 영상 재생
대상 행위	저작물의 공연·방송 (상업용 음반, 상업적 목적 공표 영상저작물 재생은 제외)	상업용 음반, 상업적 목적 공표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
허용 조건	1. 영리 목적이 아닐 것 2. 청중 · 관객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을 것 (기부목적 입장료 등 포함) 3.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1.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입장료 등)를 받지 않을 것 2. 대통령령(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허용 장소	해당 없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대표 예시	- 학교 등 비영리단체에서의 장기자랑 - 지역축제의 길거리 공연	- 학교 음악 감상 시간에 음반 재생 - 교회, 복지관, 공공도서관 등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무료 상영회



저작권법 제29조(비영리 공연) 사례 검토 자료 위치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www.copyright.or.kr>)

상담 메뉴 '자료' > '기타자료' > "비영리" 검색

(등록일: 2024.06.12.)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제1호~제7호의 장소(커피 전문점, 유흥주점, 호텔 등)에서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적용이 제한됩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장소(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발행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공연·방송 운영 방법 체크리스트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체크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공표된 저작물인가?	✓	
②	입장료·참가비·후원금 등 대가를 받는가? ※ 입장 수입 전부를 기부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도 포함	✓	
③	회사나 상품의 선전 등 간접적인 영리 목적이 있는가?	✓	
④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가? ※ 교통비, 식비 정도의 금액은 제외	✓	

①을 제외한 ②~④의 항목에 모두 '아니오'일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적용 가능

- ▣ 1. 음반, 영상의 공연 장소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제7호의 장소(커피 전문점, 유흥주점, 호텔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번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해당 공연에 대한 입장료·참가비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가?	✓	
②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가?	✓	

① '아니오', ② '예'일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적용 가능

- ▣ 2. 영상저작물 공연 장소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장소(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순번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해당 공연에 대한 입장료·참가비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가?	✓	
②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가?	✓	
③	발행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가?	✓	

① '아니오', ②③ '예'일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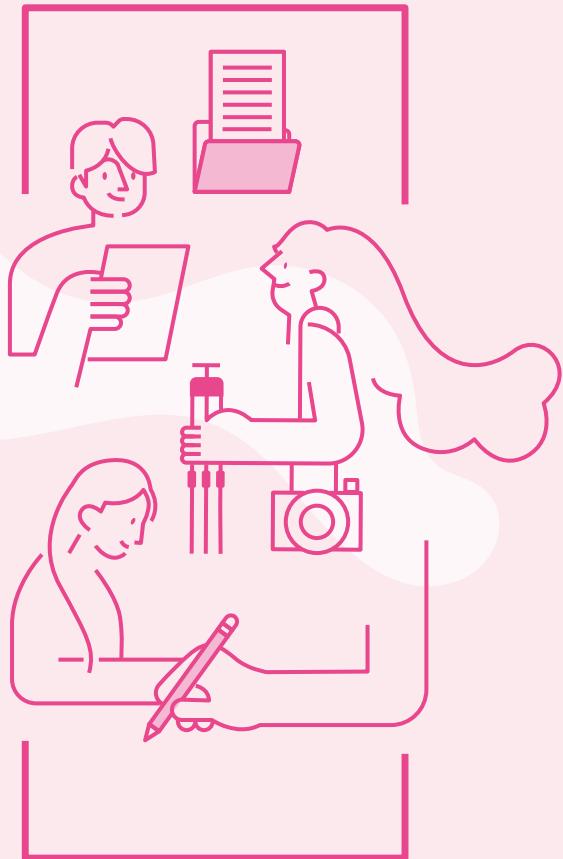
상업용 음반에 대한 설명

상업용 음반에서 '상업적 목적'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 공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 이익을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 음반의 홍보를 위해 무료로 CD를 배포하는 경우, 음반 자체의 판매 촉진을 통한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홍보나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자체 제작한 곡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 음반 자체에 대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으므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류	구분	비고
일반음반		
정규/싱글 앨범의 경우	상업용 음반	가수 ○○○ 3집 앨범, 가수 △△△디지털 싱글 등
영화/드라마의 OST	상업용 음반	드라마 ○○ OST 음악, 영화 △△OST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경우	상업용 음반	슈퍼스타K, 복면가왕, 불후의 명곡, K-POP STAR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음악
기존 상업용 음반을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대중가수의 정규/싱글, OST 등의 음반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주제·배경·시그널음반		
음반 제작업체가 사전에 제작한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을 방송국 또는 영상제작자 등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다수의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함
방송사업자가 자기의 방송을 위하여 주제·배경 ·시그널 음악을 자체 제작 또는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상업용 음반	프로그램 홍보·진행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반 자체의 상업적 목적이 없음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상업용 음반 바로 알기(2016년)

어문저작물



1. 유명 작가의 시 · 글귀 등을 인용하고 싶어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시 또는 글귀를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시·글귀 또한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하 "창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일정 조건에 따라 인용 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출처표시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Section.3

저작물별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우리 법원은 위 제28조의 "정당한 범위"에 대하여 "나의 저작물이 주된 것이어야 하고 질적 또는 양적으로 최소한의 분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은 예증 또는 참고자료로서 부종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저작물별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참고 판례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이하 생략)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한편, 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더욱 엄격히 사안을 고려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홍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끝으로,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더 이상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저작자 생존 및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행사장에서 시·동화책 등을 구연하고 싶어요.

창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시·동화 등 창작성이 가미된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낭독·구연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글을 낭독·구연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 공연·방송 요건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을 것
3.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것
4. 실연자에게 공연에 대한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위 요건에서 말하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않을 것” 이란, 공연·방송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후원금이나 지원금 등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더라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시·동화를 낭독·구연하는 그 행위만을 말하며, 이를 촬영·SNS게시 등의 행위에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3. 인터넷에서 찾은 연극 대본을 비영리 행사에 이용하고 싶어요.

창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극 대본이라 하더라도, 해당 대본이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공된 대본을 다운로드하여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그 행사의 성격이 비영리·공익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제공되는 대본 등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범위 및 목적 등 조건을 미리 정하여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해진 이용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다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누리집으로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gongu>)”
“공유마당”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다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저작물,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등을 모아둔 누리집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제공합니다.

음악저작물

♪ 1.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서 대중가요를 들고 싶어요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만약 타인이 그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면 저작권자에게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식전 행사에서 대중가요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공연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제1호~7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공연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공연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허락의 과정에서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 공연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이 다수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위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약관을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0) 하생략)

♪ 2. 버스킹이나 장기자랑에서 대중가요를 이용하고 싶어요..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만약 타인이 그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면 저작권자에게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버스킹이나 장기자랑은 타인의 저작물을 실연하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공연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버스킹과 같은 공연 행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 공연방송 요건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을 것
3.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것
4. 실연자에게 공연에 대한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위 요건에서 말하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않을 것" 이란 공연·방송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후원금이나 지원금 등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공연을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정의)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상금이 있는 노래자랑에서 대중가요 MR을 이용하고 싶어요.

상금이나 상품 등 반대급부(反對給付)가 제공되는 노래자랑의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공연이 단순한 친목·문화 향유 목적을 넘어 경제적 이익이 개입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 또는 관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란 단순한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농산물세트·기념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의 보상을 포함합니다.

즉, 참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상품이나 경품이 제공된다면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어 반대급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노래자랑에서 상금이나 상품·기념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비영리 공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자들이 부르는 대중가요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 내지는 신탁단체 등에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홍보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어요..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만약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면 저작권자에게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자(예: 작곡가, 작사가 등)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예: 가수, 음악 연주자 등)의 허락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자는 본인의 권리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관리단체가 그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 이용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곡의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한 뒤, 신탁관리되고 있는 음악이라면 각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신탁관리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악저작물 관련 신탁관리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곡,작사,외국)
<https://www.komca.or.kr> ☎02-2660-0400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곡,작사)
<http://www.koscap.or.kr> ☎02-333-8766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http://www.fkmp.kr> ☎02-745-8286
-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
<http://www.riak.or.kr> ☎02-3270-5900

연극저작물

① 연극 공연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싶어요.

허락을 받지 않고 연극 공연을 촬영,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촬영을 하는 단계에서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를 업로드하는 경우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출연자의 저작인접권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4호에 따라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는 실연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실연자에게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연자의 연기 등을 녹화하여 유튜브 등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제69조), 전송권(제74조)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으며, 실연자의 초상권 및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사전에 관련 권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무대 영상에는 연극 대본, 음악 등의 다양한 저작물이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녹화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저작물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이용 허락을 받은 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2. 우리 단체에서 직접 창작한 무대를 유튜브에 올려 홍보하고 싶어요.

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대본·안무·무대구성 등 모든 요소를 자체적으로 창작한 무대라면, 각각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단체 등에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연하거나 이를 촬영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공중 송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연 무대에서 연기 등의 표현을 한 자는 저작권법 제2조 4호에 따라 실연자에 해당할 수 있고, 실연자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연 기획자라 하더라도 실연자들의 표현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송출하거나 편집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제69조), 방송권(제73조), 전송권(제74조)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연자의 초상권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정의)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만일 무대 구성 등 공연에 직접 창작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경우, 예컨대 상업 음악, 영화 배경음악, 기존 안무나 영상 자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연물 일부가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체에서 직접 기획하고 대본, 안무, 무대 구성 등 모든 요소를 자체적으로 창작한 창작극이라면, 각각의 저작물은 단체의 저작물로서 공연 및 공중송신이 가능하지만, 출연진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허락 및 직접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확인해봐야 하며, 사전에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④ K-POP 공연을 하고 싶어요.

K-POP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 및 안무 저작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공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에 관한 사항은 앞 38면 이하 '음악저작물' 편을 확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K-POP 댄스음악의 안무 등은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한 스텝 및 동작 몇 가지일 뿐이라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재구성한점, 4인조 여성그룹 구성원의 역할에 맞게 춤과 방식의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댄스음악의 안무를 저작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 판례

이 사건 안무는 '샤이보이'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시크릿' 구성원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소녀들로 구성된 '시크릿'과 '샤이보이'라는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샤이보이'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위와 같이 안무의 저작물성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공연이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공연에 해당한다면, 안무 저작물도 예외적으로 허락 없이 공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안무를 무대에서 직접 공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학교 축제나 지역 주민행사와 같이 순수한 교육·문화 목적의 비상업적 공연이라면, 학생들이 기준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더라도 공연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공연 행위'에 한정되며, 공연을 녹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중계(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무를 각색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에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안무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지만, 공연이 비영리적 목적의 현장 공연이라면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녹화·송출·각색 등은 별도의 허락이 필요한 행위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무 저작권 안내서 위치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www.copyright.or.kr>)
상담 메뉴 '자료' > '발간자료' > "안무" 검색
(등록일: 2024.12.23.)

미술저작물

▣ 1. 구매하여 소장 중인 미술품을 홍보 등에 이용하고 싶어요.

“그림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작품의 저작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소유권은 작품이 실물 형태(예: 원고, 그림, 음반 등)로 존재할 때 그 물리적 대상을 소유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자는 저작권법 제35조에 의해 해당 작품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공원·건축물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별다른 약정 없이 미술저작물을 구매한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은 ‘소유권’ 만을 얻은 것에 그칩니다.

결론적으로 ‘그림 작품을 소유하거나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주장할 수 없으며, 이용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목적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는 계약 체결을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과 저작권

- 화가의 원화를 구매한 경우 → 그림을 전시하거나 소장할 권리 (소유권)는 생기지만, 이를 복제하거나 인쇄·홍보물에 사용하는 권리(저작권)는 여전히 작가에게 있습니다.
-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 공모전 수상작을 홍보 용도 등으로 이용하고 싶어요.

“수상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요강 또는 계약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모전 수상작을 축제 홍보물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 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 이용방법, 기간, 횟수, 장소, 이용매체, 이용 허락에 따른 대가 등)을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수상작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대가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상금·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요강에 위와 같은 이용 허락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별도로 수상자와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모전 요강에도 저작물 이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수상 이후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공모전 주최측과 저작자 간 추후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서 공고한 범위를 초과하여 입상작을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상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응모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됨’이라고 하는 공모전 요강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부당” 하다는 것이 그 사유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응모 작품(수상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음”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보도자료, 2014.8.8.) 아울러, 공모전 입장 혜택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위치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www.copyright.or.kr>)
상담 메뉴 ‘자료’ > ‘발간자료’ > “공모전” 검색
(등록일: 2025.05.19.)

▣ 3. SNS에 떠도는 이미지를 홍보 용도 등으로 이용하고 싶어요.

“저작권자가 SNS와 같은 공개된 공간에 저작물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공간에 업로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소멸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널리 알려진 저작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비영리, 전부·일부 이용을 불문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지 등의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어떤 용도로든 이용해도 된다” 등의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SNS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원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며 설정한 조건만을 지키면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사진 이용 허락 표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6면 그림을 확인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gongu>)”
“공유마당”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다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등을 모아둔 누리집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제공합니다.

사진저작물

▣ 1.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의 사진을 이용하고 싶어요.

“사진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서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사체를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 사진은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또한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의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비영리, 전부·일부 이용을 불문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라고 하여 모든 이용행위(예: 복제, 공중송신 등)를 허락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가령, 픽사베이(Pixabay), 언스플래시(Unsplash), 펙셀스(Pexels)와 같은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서는 ‘상업적 이용 불가’, ‘내용 변경 금지’ 등의 이용 제한 조건을 저작권자가 사전에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물에 설정된 이용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이미지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초상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진저작물을 다운받아 이용할 때는 물론이며 업로드 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초상권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법적 기준 차이

미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은 '공적 인물 또는 공적 장소에서의 노출'을 이유로 초상권 보호 범위가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나 행사장에서 촬영된 인물 사진이 자유롭게 활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도 초상권이 여전히 보호됩니다. 개인이 식별 가능한 얼굴, 체형, 복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특히 광고·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림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http://ccl.cckorea.org>)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표시제도



CC BY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NC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
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
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2. 지자체나 공공기관 누리집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고 싶어요.

"지자체나 공공기관 누리집에 있는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역 홍보자료에 있는 사진은 보통 지자체의 누리집 등에 게시된 경우가 많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저작권(복제권(제16조), 공중송신권(제18조) 등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천적으로 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가 갖습니다. 이후 사진가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지자체와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혹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사진을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1항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만을 체결한 경우, 사진의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인 사진가에게 있으므로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때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나 공공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저작물을 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2) 정당한 범위 안에서,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이러한 인용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니라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영리적인 이용이라 하여 인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 비영리적 이용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조항 외에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공정이용’의 법리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적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겠습니다.

아울러, 사진 속에 사람이 식별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과는 별개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도 인물이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이 여전히 보호되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행사 홍보에 활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공공누리, KOGL)
 ‘공공누리’란 저작권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공공누리 4가지 유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림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유형	표시방법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내용변경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내용변경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내용변경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제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내용변경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gongu>)”
 “공유마당”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다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공공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등을 모아둔 누리집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제공합니다.

▣ 3. 행사 단체 사진을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싶어요(초상권)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얼굴뿐만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이 드러난다면, 초상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초상권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저작권이 ‘창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라면, 초상권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에 관한 법적 보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체촬영 사진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었다면, 해당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초상권자의 허락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람(사진가)에게 귀속됩니다. 촬영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사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진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축제나 행사에서 주최 측이 직접 단체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인물의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진을 SNS·보도자료·포스터 등으로 활용하려면 초상권과 관련하여 인물들에게 촬영 및 활용 목적을 고지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특정인의 얼굴이 중심적으로 나타나거나 클로즈업된 경우에는 개별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나 보호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한편, 촬영된 인물들이 멀리서 작게 등장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이거나 단순 군중 장면(예: 거리행진, 관람석 전경 등)의 일부로 포착된 경우, 법원은 이것이 ‘사회 통념상 수인(受忍)하여야 할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사진이 상업적·홍보적 목적으로 이용될 때는 여전히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결론적으로, 초상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얼굴뿐만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이 드러난다면, 사진의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초상권자의 허락도 필요합니다.

영상저작물

▣ 1. DVD, OTT 등을 이용하여 무료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싶어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관람료 등)를 받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 블루레이(Blu-ray),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영화 상영 행사 요건

1.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관람료나 입장료 등 대가를 받지 않고,
2.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 블루레이(Blu-ray),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파일 등을 이용하되
3.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일부 제한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비영리 공연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고(제1호~제7호), 특정 시설에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만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제8호).

가령,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라목에 해당하여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 계정을 TV에 연결해 여러 사람이 함께 시청하는 방식은 각 서비스 약관에서 금지하는 '개인적 이용 범위를 넘어선 공개 상영'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 역시 다수가 시청하는 공개 상영 목적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했는지 불분명한 콘텐츠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 복제물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을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과 같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라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라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애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속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12.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이용(편집)하고 싶어요.

유튜브에 게시된 개인 제작 영상뿐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영화, 다큐멘터리, OTT 서비스 콘텐츠, 온라인 강의, 기업 홍보 영상 등 모든 영상물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타인이 창작한 영상을 사용(편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러한 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복제하거나, 일부를 잘라 다른 영상에 삽입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제16조) 및 공중송신권(제18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유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이나 제28조(인용)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참고 판례

인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합리적인 관행 합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용저작물이 주가 되고, 피인용저작물은 보조,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종이 되는 이른바 주종관계의 성립 여부 및 인용하는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우선,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의 요건으로는 ▲공표된 저작물일 것, ▲공정한 관행에 부합할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일 것, ▲인용 부분이 주된 저작물의 부수적·보조적 위치에 있을 것, ▲인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단순 장식이나 분위기 조성은 불가)과 같은 엄격한 요건들을 요하고 있으며 위 요건에 충족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적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공정 이용이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용 수준을 넘어 저작물의 형태나 내용을 직접적으로 수정·편집·가공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려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 · 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끝으로, 유튜브나 다른 영상 플랫폼의 이용약관에서도, 콘텐츠를 임의로 다운로드하거나 편집·재배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예: '공유하기', '내보내기',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편집·재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이용약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13. 우리 기관에서 개최한 행사 장면이 송출된 방송물을 이용하고 싶어요.

지역 방송사가 취재하여 방영한 영상에 우리 기관의 행사 장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방송 영상을 기관이 자유롭게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사는 해당 영상을 직접 기획·촬영·편집하여 완성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그 영상에 대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이용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의 활동이 일부 등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방송 영상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SNS·홍보영상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기관이 촬영 대상이 되었으므로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출처만을 표시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우리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인용이 인정되려면 해당 이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며, 인용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용은 다른 저작물 속에 보조적으로 삽입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보용 편집은 해당 영상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인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5)은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이용형태라도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방송영상을 단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기존 방송영상의 시장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행사 장면이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은 여전히 방송사의 창작물로 보호되며, 인용이나 공정이용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또는 SNS 게시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방송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음식점과 같이 공공기관 또한 방송 출연 장면을 캡처하여 벽면, 홈페이지, 전단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송사의 별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더러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방송사의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축저작물

▣ 1. 건축물을 본떠 전시 조형물을 제작하고 싶어요.

건축물도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건축저작물에 해당(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합니다.

이에 유명 건축물을 축소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에 사용하는 경우, 특정 건축물의 외형을 본떠 조형물, 장식물로 구현하는 경우, 건축물의 독특한 외관을 그대로 재현한 CG·영상·광고 이미지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은 각각 원저작자의 복제권 및 2차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 판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략)

乙의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다만, 모든 건축물이 저작물인 것은 아닙니다. 기능성·실용성으로 인해 누가 해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경우까지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독점시키면 새로운 건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작성 방법상 표현의 한계나 건축법령 등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수분양자들의 선호평형이나 배치 등으로 인한 제한이 있는 점과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편의성, 효율성 등 기능적 가치가 중요시되어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점이 특징을 가지는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주거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는 그 자체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과 설계도의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서는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고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추어도 다양한 표현이 어렵고, 또 상정이 가능한 극히 제한된 표현행태에 그치는 경우에는 결국 합체의 원칙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법원 역시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수분양자들의 선호평형이나 배치 등으로 인한 제한과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편의성, 효율성 등 기능적 가치 등으로 인해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건축저작물의 보호기간

건축저작물도 일반저작물의 보호기간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한편,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의 제작은 업무상저작물일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까지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저작권법 41조 참고).

또한, 건축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후 70년(저작권법 제39조)이며, ‘에펠탑’이나 ‘콜로세움’처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역사적 공공물로 간주되는 건축물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명 건축물의 외형을 본떠 전시용 조형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다면, 이는 원저작자의 건축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설계자(또는 건축사사무소)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기능적 형태에 불과하거나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이라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례로 보는 건축가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위치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www.copyright.or.kr>)
상담 메뉴 ‘자료’ > ‘발간자료’ > “건축” 검색
(등록일: 2025.02.25.)

▣ 2. 건물 앞 조형물을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요.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른 복제권은 저작물을 고정(녹화·촬영 등)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건축물이나 조형물의 외형을 영상 카메라로 촬영하고 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조형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재현한 경우”와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모든 촬영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현실적 이용 관행을 반영하여, 공공장소에 항시 전시된 저작물(미술·건축·사진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 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첫째,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광장이나 거리, 공원 등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된 조형물이나 건축물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촬영과 게시가 가능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미술저작물 등' 이란?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공표권)의 규정에 따라 '미술저작물 등'에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예외적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조형물을 단순히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조각을 조각으로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 등)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 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촬영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등이 우연히 영상에 함께 담겼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수적 복제'에 해당하며 우연히 또는 부수적으로 복제·배포·전송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즉, 촬영의 목적이 행사 자체나 인물, 현장 분위기 등에 있고, 저작물은 단순히 배경이나 환경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작물이 영상의 주된 피사체로 등장하거나, 특정 조형물이나 미술품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는 등 저작물을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 자체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1. '무료폰트'를 이용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싶어요.

'무료폰트'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되며 그 사용 범위는 폰트를 배포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폰트'라고 명시된 대부분의 폰트들은 이용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활용은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공 폰트가 '비영리·개인용'으로만 이용을 허락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공공기관·기업·단체가 제작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하는 것은 그 용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용약관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법률위반과 약관위반의 차이

- 법률위반: 민사·형사·행정 제재
- 약관위반: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등)만 발생함

우리 위원회에서는 폰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정리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안내 책자를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 자료 위치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www.copyright.or.kr>)

상담 메뉴 '자료' > '발간자료' > "글꼴" 검색 (등록일: 2019.01.22.)

▣ 2.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싶어요.

게임은 영상, 음악, 미술, S/W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과 달리, 기관이나 지자체가 공개적인 대회를 주최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개인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프로그램 자체뿐 아니라 화면 구성, 배경음악, 캐릭터, 대사, 인터페이스(UI) 등 게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각각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대회 과정에서 게임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중계하거나, 대회 장면을 촬영·게시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게임 이용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며, 단체나 기관이 주최하는 공개행사, 홍보 목적의 대회, 유튜브나 트위치 등에서의 중계와 같은 행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행사 홍보를 위해 대회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게임사로부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나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회 포스터나 배너, 홍보영상 등에 게임 로고나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게임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활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참가비를 받거나 후원사가 참여하는 등 상업적 요소가 포함된 행사는 더욱 엄격한 이용 허락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대회 개최를 위한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벤트 라이선스(Event License) 신청'이나 '공식 파트너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최자는 대회의 목적, 규모, 개최 장소, 중계 여부, 상금 지급 계획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게임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게임사는 비상업적 지역 대회에 한해 일정 조건 아래 무료로 이용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상금 규모가 크거나 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게임대회 개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일종의 '저작물 이용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최자는 대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용약관과 저작권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게임사와 협의하여 이용 허락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게임대회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Q13. 학교 동아리나 지역 모임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할 수 있나요?

A13. 학교 동아리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학교 동아리가 본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커뮤니티 대회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출처: www.nintendo.co.kr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출물

▣ 1.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싶어요.

생성형 AI 이용자는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학습된 대량의 데이터가 기존 저작물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유사한 산출물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용방식에 따라 저작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초상, 음성, 성명 등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성형 AI 이용자는 원하는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AI 산출물을 공연, 전시, 배포, 공중송신 등의 방식(외부로 공표)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생성형 AI 사업자는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AI 산출물 이용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이용자는 약관 위반 등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국/영문) 자료 위치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www.copyright.or.kr>)
상담 메뉴 '자료' > '발간자료' > "AI" 검색 (등록일: 2024.01.16.)



Section. 4 — 부록

유용한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 누리집

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안내

전화 1800-5455

누리집 www.copyright.or.kr

주요 서비스 챗봇상담, 유형별상담, 법률문의 게시판 등

2.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홈페이지 <https://gongu.copyright.or.kr>

서비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 제공

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법정허락

홈페이지 <https://www.findcopyright.or.kr>

서비스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4. 주요 신탁관리 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www.komca.or.kr

음악저작자(작곡, 작사)의 권리, 음악저작물 이용(공연) 허락 신청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02-333-8766 www.koscap.or.kr

음악저작자(작곡, 작사)의 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www.riak.or.kr

음반제작자의 권리(신탁관리 및 이용허락)

한국연예제작자협회

02-2677-7630 www.k-pops.or.kr

음반제작자의 권리(보상금 징수 및 분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www.fkmp.kr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02-2608-2800 www.korra.kr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의 권리



한국방송작가협회

📞 02-782-1696 🏠 www.ktrwa.or.kr

▣ 방송작가의 권리

한국언론진흥재단

📞 02-2001-7114 🏠 www.kpf.or.kr

▣ 신문기사 등에 대한 권리



영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02-2275-0566 🏠 www.scenario.or.kr

▣ 영화시나리오작가의 권리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02-784-7802 🏠 www.kobpra.or.kr

▣ 방송 실연자(탤런트, 성우 등)의 권리

한국영화배급협회

📞 02-3452-1001

▣ 영화 등에 대한 권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02-2267-9983 🏠 www.kfpa.net

▣ 영화 등에 대한 권리



한국문화정보원

📞 02-3153-2820 🏠 www.kcisa.kr

▣ 공공저작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문화·축제 행사관계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펴낸날 2025년 12월

기획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집필 강민지, 김동수, 박동희, 이미연, 이수현

펴낸곳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1 경남진주시 소호로 117

04323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케이트웨이타워5, 16층)

제작 한국장애인문화컨텐츠협회

ISBN 978-89-6120-617-4 [94010]

978-89-6120-038-7 (세트)